

석사학위논문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종 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고 재 옥

2004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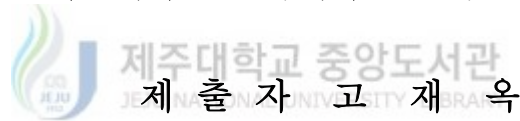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종 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고재욱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문초록>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 재 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박종필

본 연구는 현재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전문직의 선발, 임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전문직의 선발과 임용, 전문화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교육전문직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수한 교육전문직 인력 선발 및 전문화 방안을 제시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행 교육전문직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전문직의 선발 및 임용에 대한 교사의 지각은 어떠한가?

셋째,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임용전형규정을 참조하고, 일선 중·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얻어 설문지를 만들었다. 설문지는 현행 교육전문직에 대한 교사의 인식 6문항, 교육전문직의 선발 및 임용에 대한 교사의 지각 13문항,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방안 7문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주도 소재 중학교 7개교와 고등학교 7개교에 410부를 배부하여 400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하고 395부를 최종 분석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임.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육전문직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교사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은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교육감이 친분 위주로 교육전문직을 임용하였고,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승진 기회가 많아서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직 장학활동 수행상 가장 큰 문제점은 장학 요원부족과 장학요원 자질의 부족, 경제적 대우 미흡 등 복합적 요인에 있으며,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의 요인도 자격기준의 불합리와 현직연수의 미흡, 선발이후 임용 전 연수의 미흡 등의 복합적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전문직의 선발 및 임용에 대한 교사의 지각을 살펴본 결과, 교육전문직 선발시 교육경력은 10년 이상이 가장 타당하며, 학위는 석사 이상이, 근무성적은 “우” 이상이, 소지자격은 1급 정교사 이상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남, 여 비율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전문직 선발시 연구성과 부장교사 경력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보다 많았고, 부장교사 경력은 5년 이상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방안을 살펴본 결과,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의 선발 방법은 필답고사가 가장 적합하며, 필답고사 시험과목은 교양, 교육학, 현장실무가 적합하고, 선발인원은 소요 인원이,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2년간이, 합격자의 임용은 직위와 상관없이 성적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 전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전직이 좋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많았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하는 현행 제도에서 교육전문직 경력은 3년 이상이 가장 적당하며, 직무수행에 연수기간은 1년 이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임용 후 현직 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장학담당자 자신과 장학활동 프로그램, 장학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전직시 자격기준과 전직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수과정을 설치·운영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운영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우수한 교육전문직 발굴·임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문제 | 3 |
| II. 이론적 배경 | 4 |
| 1. 교육전문직의 성격과 법적 근거 | 4 |
| 2. 교육전문직의 자질 | 6 |
| 3. 교육전문직의 임용방법 및 절차 | 10 |
| 4. 선행연구 고찰 | 17 |
| III. 연구방법 | 20 |
| 1. 연구대상 | 20 |
| 2. 조사도구 | 21 |
| 3. 자료분석 | 21 |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22 |
| 1. 현행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식 | 22 |
| 2. 교육전문직의 선발 및 임용 | 34 |
| 3.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선발방법 | 48 |

4.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방안 56

V. 요약 및 결론 68

 1. 요약 68

 2. 결론 70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설문지>



표 목 차

| | |
|--|----|
| <표 II-1> 현직 교감 및 교감 자격 소지자 전형 배점표 | 12 |
| <표 II-2> 현직 교사 전형 배점표 | 13 |
| <표 II-3> 가산점 평정표 | 13 |
| <표 II-4> 연구실적 평정표 | 14 |
| <표 II-5> 포상 평정표 | 14 |
|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0 |
| <표 IV-1> 교육전문직 임용 기준 | 23 |
| <표 IV-2> 교육감 재량의 기준에 대한 인식 | 25 |
| <표 IV-3> 교육전문직 임용의 공정성이 선발고사 응시인원에 미치는 영향 | 27 |
| <표 IV-4> 교육전문직 임용의 공정성이 선발고사 응시인원에 영향이 미치는 이유 | 28 |
| <표 IV-5> 교육전문직 장학활동 수행상 문제점 | 31 |
| <표 IV-6>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 | 33 |
| <표 IV-7> 교육전문직 선발시 교육경력 | 35 |
| <표 IV-8> 교육전문직 선발시 학위제한 | 37 |
| <표 IV-9> 교육전문직 선발시 근무성적 | 38 |
| <표 IV-10> 교육전문직 선발시 소지자격 | 40 |
| <표 IV-11> 여교사의 교육전문직 선발 | 42 |
| <표 IV-12> 교육전문직 선발시 연구성적 | 44 |
| <표 IV-13>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 | 45 |
| <표 IV-14> 교육전문직 선발시 타당한 부장교사 경력 | 47 |

| | |
|---|----|
| <표 IV-15> 교육전문직 선발방법 | 48 |
| <표 IV-16> 교육전문직 선발시 필답고사 시험과목 | 50 |
| <표 IV-17> 교육전문직 선발인원 | 52 |
| <표 IV-18>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기간 | 53 |
| <표 IV-19> 합격자의 임용방법 | 55 |
| <표 IV-20>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 전직 | 57 |
| <표 IV-21>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에 대한 인식 | 59 |
| <표 IV-22>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하는 현행 제도의 기준에 대한 인식 | 61 |
| <표 IV-23>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기간 | 62 |
| <표 IV-24>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질 향상 방안 | 64 |
| <표 IV-25>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 | 67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교육의 질적 수준은 국가발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보화,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나아가 지식기반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늘날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 교수-학습의 질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한 교사의 질 및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장학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도·조언하는 교육전문직의 정책개발 및 장학활동 등을 뒷받침하는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제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각 시·도에서는 교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여 교육전문직에 보하고, 근무 중에 일정한 연수를 통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교육행정 규모 확대, 기능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의 자질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교육 전문직에 관한 여러 가지 비판 및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전문직은 자신이 맡은 전공교과의 전문가로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교사를 지도·조언하며, 학교행정을 지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전보의 수단으로 전문직이 활용되고 있어서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교육전문직이 교육정책 개발, 교과지도, 교육연구·개발, 행정지도 등으로 그 기능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 교육청이나 하급 교육청의 정원 부족으로 초·중등의 교과별 전담 장학사도 확보하지 못하여 1인 장학사가 여러 개의 교과와 여러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장학요원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과다는 불가피하게 담당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한다(남정걸, 1996: 304~305).

장학 요원의 부족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사의 교수 행위 개선 및 교육 운영의 합리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장학 활동은 교육전문직과 교사간의 신뢰를 통하여 교사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아서 자기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장학이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학교 현장의 교육적 요구나 필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고 있다. 즉 장학 활동이 지나치게 관료적이며, 이론적 형식에 치우치고 있고, 구체적인 지도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이윤식, 1999: 167~168).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 전문직의 중요성과 비판에서 출발하여, 현재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전문직의 선발, 임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전문직의 선발과 임용, 전문화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교육전문직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수한 교육전문직 인력 선발 및 전문화 방안을 제시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육전문직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전문직의 선발 및 임용에 대한 교사의 지각은 어떠한가?

셋째,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방안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전문직의 성격과 법적 근거

1) 교육전문직의 성격

교육전문직은 교육공무원법 제 9조에 근거하여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지칭한다. 교육전문직은 교원이나 교육행정가 등과 같이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126).

일반적으로 전문직이 가지는 특성은 첫째,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고도의 지식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간의 준비교육이 필요하고 일정한 자격과 기술이 요구된다. 셋째, 명확한 직무한계 내에서 업무수행자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넷째, 개인적 이익보다는 이타적 봉사가 중요시된다. 다섯째, 전문적 활동을 위한 조직과 단체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 스스로 윤리강령을 설정하여 조직을 통제해 나간다는 점 등이다(서정화, 1989: 97~98).

대한교육연합회에서는 교직의 전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최창욱, 1999: 6). 교직이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뜻은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으나 그 핵심은 두 가지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지성을 필요로 하는 정신적 활동이며,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직이 다른 전문직 즉, 의사직, 변호사직 또는 목사직 등과 마찬가지로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의 신분은 교원과 같은 직종으로서 다같이 전문적 자

질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교원보다도 다른 차원의 새로운 지식과 지도성 및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전문직은 법률이 정한 자격에 의하여 임명되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이면서도 그 기능은 학생교육이 아닌 학교행정의 지도·감독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도·조언하고, 교사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을 본연의 직무로 한다면 그 자질과 성격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교육전문직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고도의 지성을 토대로 한 학문적, 기술적 수월성을 겸비한 자가 교육체계의 유지 발전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정책의 수립, 수업, 학교경영 및 학생지도에 대한 장학, 교육과정과 관련한 편수·관리, 교육연구, 교원연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현행 교육전문직 자격 기준

현행 교육전문직 임용의 법적인 근거는 국가공무원법(법률 제4829호, 1994. 12. 22.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 14441호, 1994. 12. 23. 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 505호, 1994. 6.8. 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위의 법령들 중에서 교육전문직의 자격기준과 전직, 특별채용, 전문직의 승진 등에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교육전문직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고찰하면 교육전문직의 자격기준은 대학 졸업자(여기서 대학이란 사범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의 학사과정을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 또는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9조).

특수지 근무를 위하여 교육전문직을 임용할 때에는 교육행정 경력 또는 교육연구를 교육경력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에 의하면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로서, 단 교육경력에는 3년의 범위 기간 이내의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을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다(교육공무원법 인사관리규정, 교육부훈령 제505호, 제13조). 또 동규정에 의하면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임용을 위한 전형기준 등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다시 위임하고 있다.

2. 교육전문직의 자질

교육전문직은 교사로부터 출발하여 임용되므로 일반행정직과는 다른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모든 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Campbell(1996)은 교육행정가나 교육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자신의 신념, 가치 및 목표), ② 타인에 대한 이해와 협동 기술, ③ 행정업무 수행상 신체적·정신적·사회심리적, 성격적 제 특성의 활용능력, ④ 국민교육제도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이해, ⑤ 아동에 대한 이해, ⑥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기술, ⑦ 자기만족의 타파와 부단한 발전의 의욕, ⑧ 유능한 행정가가 되기 위한 노력(인식의 면, 정서의 면, 가치관의 면 등)이라고 하였다(Campbell, 1996: 357~368).

김창걸(1992)은 교육전문직의 자질을 장학담당자의 경우 인성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필요로 한다고 하며, 인성적 자질로는 존경과 신뢰 획득 능력, 감정 이입과 감수성, 정열, 문제 적응력, 독창성, 유머감, 상대적 가치관, 성실성, 풍부한 자원제공 능력 등을, 전문적 자질로서는 광범위한 교양, 전문지식, 교수 기술,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 지도성, 교수자료와 방법

에 관한 지식, 평가 및 해석능력, 과정과 산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실험과 연구에 대한 숙달, 그리고 인간적 및 전문적 성장을 계속할 능력과 의욕을 말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태범(1996)은 장학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으로서 인간적인 면, 전문적인 면, 그리고 종합적인 면을 들었고, 인성적 자질로서는 폭넓은 교양, 전문적인 교수기술, 지도성, 교육평가체제의 인식 및 평가능력 등을 들었다.

전문적 측면은 교육과정 개발, 수업계획서 작성, 학습단원의 개발, 학습자료 센터의 자료 구비, 임상장학 활동계획, 연례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다. 인간적 측면의 자질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성찰과 관계 유지, 지도성, 동기유발, 태도의 개발, 집단 역동, 인간자원 개발 등에 관한 지식, 이해 및 조작능력을 포함하며, 종합적인 측면은 학교, 지역사회, 교육계획에 대한 체계적 사고, 학교의 구성요소, 교수 체제로서의 교육계획, 인적체제로서의 인간조직의 구성, 인간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장학업무를 수행하는 장학담당자로서 요구되는 역할 및 자질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교직자로서의 품성과 사명의식이며, 근무실적으로 교육지도관리, 교원지도관리, 사무관리 및 교육연구가 포함된다. 한편, 조병효는 장학담당자의 자질을 인성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장학담당자가 장학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성적 자질은 다음과 같다(조병효, 1981: 78~84).

① 존경과 신뢰획득능력: 장학담당자는 계선관계에서 보다 막료관계에서 교사들과 함께 과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뛰어난 능력과 성실성을 발휘하고 그리고 교사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등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그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② 감정이입과 감수성: 장학담당자는 교사들의 기본과 반응에 대한 뛰어난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교사의 동기와 반응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그의

태도에 적극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③ 정열: 장학담당자는 계속적으로 정열을 보아야 한다.

④ 문제 대응력: 장학담당자는 어떤 사태 하에서도 낙관적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과업을 처리해야 한다. 문제처방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현실적이며 비방어적(nondefensive)인 자아개념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⑤ 창조력: 교사들로 하여금 보다 새롭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도록 장학담당자는 자신의 시범을 통해서 창의성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⑥ 유머감: 교사들과 관계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건설적인 비평을 유쾌한 분위기에서 받아들여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하여야 한다.

⑦ 상대적 가치관: 여러 가지 과업을 한 가지 기준에서 보다 상대적 입장에서 그 가치를 종합적 입장에서 또한 장기발전을 전체적인 면에서 고찰 평가하여야 한다.

⑧ 성실성: 장학담당자들이 교사들의 개성을 존중하며 진정으로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사들이 확신할 때 그들의 성실성에 대한 교사들의 협조가 뒤따르게 된다.

⑨ 풍부한 자원제공: 장학담당자는 풍부한 자원인사로서 교사들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장학이 교수·학습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적 지도·조언이라면 장학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전문적 자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학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 자질을 구비해야 한다.

① 광범한 교양교육: 광범위한 교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교육: 장학담당자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학에서 직전교육

으로서 교육학의 기본영역을 이수해야 한다.

③ 교수기술: 장학담당자는 다년간 성공적인 교수·학습 경험을 통하여 교사들을 지도하고 조언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높은 교수기술을 지녀야 한다.

④ 교육과정에서의 역할에 관한 명확한 인식: 장학담당자는 교육의 과정에서 협동적으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역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특성 관계를 알아야 한다.

⑤ 지도성의 기술: 지도성의 기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스로 지도성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들에게 지도성을 길러 주는 것이다.

⑥ 교수자료의 방법에 관한 지식: 교과서, 과제장, 보조독본, 참고서, 지역 사회자원 그리고 시청각자료와 같은 교수·학습자료의 장·단점과 사용법 등을 알아야 하며, 이와 같은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도록 계속 연구해야 한다.

⑦ 생산적 교수·학습요소를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교사를 방문하여 교수능력의 정도와 관련되는 몇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⑧ 과정과 산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장학 담당자는 과정과 결과의 중요성에 관한 전문적 인식을 개발해야 한다.

⑨ 실험과 연구에 대한 숙달: 장학담당자는 교육연구와 실험에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의 과업 중 많은 부분이 교육연구 및 실험과 관계가 있다.

⑩ 인간적 및 전문적 성장을 계속할 능력과 의욕: 강습회, 연구협의회, 세미나, 회의, 연구집회, 협동연구 등에 참가하여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어야 하며 새로운 교과서, 교육연구지, 교육연감, 전공분야의 연구논문집 등을 입수하여 끊임없이 읽어야 한다.

학교 현장의 장학지도를 담당하는 장학담당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개선을 위해 교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Burch와 Danley는 수업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역할과 관련지어 정보제공, 자원배분, 훈련, 개발, 관찰 및 평가, 동기화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Burch & Danley, 1980: 636~637).

장학담당자의 역할에서 중간자로서의 장학담당자는 교사와 행정가라는 상호 대치적인 두 세계 사이에서 중재자적 또는 완충적 역할을 하게 된다. 주변인으로서의 장학담당자는 중간적인 위치에서 있지만, 학교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의사결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및 행정가 양 집단으로부터 수용되지 못한다. 인간관계 전문가로서의 장학담당자는 행정적인 지시에 대해 교사들의 협조를 얻고자 노력하며 교사들의 특성에 부합되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인간자원 연결자로서의 장학담당자는 완충적 역할보다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며, 학교 내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인성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 종합적 자질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교단경력을 통해 교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교과지식, 일반교양, 행정전문 지식 면에서 교사보다 우수해야 하고 교사와의 인간관계를 통해 교사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교육전문직의 임용방법 및 절차

1) 교육전문직의 임용방법 및 절차

각 시·도에서는 매년 익년도의 교육전문직 결원 보충을 위한 임용후보자 선발계획을 세워 장학사·교육연구사를 충원하게 되는데 선발과정에서

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선발에 관한 규정은 각 시·도마다 약간씩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주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임용 전형규정(제주도 교육예규 제53호)에 나와 있는 전형위원회 구성, 회의, 기능, 선발시험 응시대상자 추천, 교육전문직의 선발방법 및 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전형위원회

가. 전형위원회 구성

교육전문직 임용전형규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④ 위원은 제주도교육청 국·과장 및 장학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되, 교육국장, 교원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인사담당 장학사로 한다.

나.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 부재시는 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전형방법, 전형 절차, 전형 결과 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선발시험 응시대상자 추천

추천권자: 지역교육청교육장(국립 초·중학교 포함), 국·공립고등학교장, 공립특수학교장,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도내 학교법인 이사장.

추천대상자: 교육전문직 임용을 위한 전형대상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현직교감(원감), 교감(원감) 자격 소지자,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교사.

(3) 선발방법

① 현직교감, 교감자격 소지교사, 교사로 구분하여 전형한다.

- 서류전형의 평정항목은 경력, 연구실적, 근무성적 및 포상으로 한다.
- 면접교사는 국가관, 교직원,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 및 전문성을 평정한다.
- 전형에 따른 배점은 <표 II-1>과 <표 II-2>와 같다. 다만, 가산점은 <표 II-3>과 같다.

② 현직교감과 교감자격 소지교사는 면접교사와 서류전형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현직 교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접교사를 면제할 수 있다.

<표 II-1> 현직 교감 및 교감 자격 소지자 전형 배점표

| 전형방법 | | 배점 | 비율 | 비고 |
|------|---------|-----|------|-------------------------|
| 서류전형 | 경력평정점 | 20 | 20% | 경력평정은 승진규정을 준용한다. |
| | 연구실적평정점 | 10 | 10% | |
| | 근무성적평정점 | 16 | 16% | |
| | 포상평정점 | 4 | 4% | |
| | 소계 | 50 | 50% | |
| 면접교사 | | 50 | 50% | |
| 합 계 | | 100 | 100% | |

<표 II-2> 현직 교사 전형 배점표

| 전형방법 | | 배점 | 비율 | 비고 |
|----------|---------|-----|------|--|
| 서류 전형 | 경력평정점 | 15 | 15% | 경력평정은 기본경력 10년을 10점으로 평정하고 그 이상 초과 경력은 매 1년 초과마다 0.5점을 가산하되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 | 연구실적평정점 | 13 | 13% | |
| | 근무성적평정점 | 8 | 8% | |
| | 포상평정점 | 4 | 4% | |
| | 소계 | 40 | 40% | |
| 필답고사 | | 40 | 40% | |
| 면접고사 | | 20 | 20% | |
| 합 계 | | 100 | 100% | |

<표 II-3> 가산점평정표

| 구 분 | 평 정 점 | 상한점 |
|--------|--|-----|
| 정보처리 | 정보소양인증 취득자 1점 | 2 |
| | 정보처리관련 기사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이상 2점 | |
| | 정보처리기능사 2급,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1점 | |
| | 대학원 관련 자격 취득(석사) 2점 | |
| 어학관련능력 |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59호'98. 3. 27)Ⅱ-2-나-(1)의 학점화 대상 2점 | 2 |
| 석박사학위 | 직무관련학위 석사 2점 박사 4점, 기타 학위 석사 1점 박사2점, 단, 정보처리 분야에 적용하면 제외 | 4 |
| 보직교사경력 | 교사에 한하여 부여함. 7년 이상 4점, 5~6년 3점, 3~4년 2점, 1~2년 1점 | 4 |

③ 교사는 서류전형, 필답고사 및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 서류전형의 평정항목은 경력, 연구실적, 근무성적 및 포상으로 한다.
- 필답고사는 교직(교육학일반)·교양과목(교육시책, 일반상식, 교육법규)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면접고사는 국가관, 교직원,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 및 전문성을 평정한다.

④ 합격결정은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점 평균이 만점의 60%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표 II-4> 연구실적 평정표

| 구분 | 도규모 | | | 전국규모 | | | 상한점 |
|----|-----|------|-----|------|-----|-----|-------------------------------------|
| | 3등급 | 2등급 | 1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 배점 | 0.5 | 1.25 | 2 | 2 | 2.5 | 3 | -현직 교감과 교감자격소 지자 10점, -교사 13점 |

<표 II-5> 포상 평정표

| 포상구분 | 교육장 | 교육감 | 장관 | 국무총리 | 대통령표창, 훈장 또는 모범공무원 |
|------|-----|-----|----|------|-----------------------|
| 배 점 | 0.5 | 1 | 2 | 3 | 4 |

(4) 임용방법

① 임용권자가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위원회 심의 후, 임용후보자 순위명부에 의하여 선 순위자 순으로 임용한다. 단, 교육연구·학술진흥·특수교육 및 예·체능분야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직교장이나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원 중에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 순위명부에 불구하고 특별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2) 교육전문직의 전직 기준

(1) 교육전문직의 전직 기준

전직에는 교원에서 전문직으로, 교육전문직 특별채용,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하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에 있어서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교육공무원법 제 30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33조에서는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교육공무원 임용에서는 교육감 소속의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 14441호, 1994. 12. 23. 제 3조).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임용하여야 하며 그 전형기준, 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교장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둘째, 교육전문직의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 1조(특별채용)에 의하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다(1981. 11. 23. 동 법 중 개정, 법률 제 10635호)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전문직에의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셋째, 교육전문직에 있는 자가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육전문직 이전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14조). 다만, 교육전문직 2년 이상의 재직자로서 교육,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22년 이

상인 자는 교장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으며,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17년 이상인 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연간 3회 이상 시말서 제출한 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신체 정신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전직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제주도 교육전문직 전직 기준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 13조 2항~4항).

- ① 교장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장·교감이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 ③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 단, 교육경력에는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한 기간을 포함한다.
- ④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형을 임용하여야 한다, 전형기준·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교육전문직에 있는 자로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동규정 제 14조에 의하

여 다음 기준이 적용된다.

- ① 교육전문직 이전의 직위에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직 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으며,
- ②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 17년 이상인 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 ③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육전문직의 전직은 동일 직급간의 교육부, 시·도의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그리고 학교간에 가능하다. 전직·전보의 인사원칙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선행연구 고찰



교육전문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장학에 초점을 맞추어져 이루어져 왔으며, 교육전문직의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학담당자들이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권오걸(1994)은 장학관·연구관의 자격기준은 교육경력 20년 이상, 학위는 장학 및 교육행정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소지자격은 교감 경력 이상, 교육전문직 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장학사·연구사의 임용 후보자 선발을 ① 선발방법은 공개 선발고사에 의하되 서류전형·필답고사 및 면접고사를 병행하되 시험과목은 교양·교육학 그리고 전문과목으로 한다. ②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에 한하되, 국립은 국·공립교원으로 특채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자라야 한다. ③ 선발인원은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

말한다. ④ 합격자 사정은 전공과목별로 선발하며, 그 합격 유효기간은 3년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박동문(1998)은 현행 장학담당자들의 역할 수행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장학담당자들은 교육과정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교수-학습 지도방법의 기술을 소유하고 교사들의 수업지도에 대한 조언과 상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당면 문제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장학담당자의 채용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교사들이 따를 수 있는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의 수업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길동(1999)은 장학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장학행정 조직의 단계별·수준별 전문화가 되어야 하며, 장학담당자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학담당자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 필요하며, 장학담당자의 수를 늘려야 하고 장학업무 보조원을 두어야 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장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윤보영(1999)은 형식적인 장학활동에서 벗어나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장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학담당자들이 학교현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의례적인 학교 방문이나 평가가 아닌 교육의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장학담당자는 항상 학교현장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회성의 학교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며, 장학담당자와 교사는 교육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자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최창옥(1999)은 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에 있어서 일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면, 현행 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추천 없이도

응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교육전문직 임용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의 신설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병현(2000)은 수업장학담당자의 역할과 자질로서 중요한 것은 교수-학습 기술과 담당교과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라고 하면서 교사 지도 능력을 기르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 연찬과 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학담당자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닌 전문적 지식과 능력 및 기술에서 나오는 권위를 가지고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태도로써 장학에 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장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장학담당자의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교사들이 장학담당자들의 장학활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사들이 기대하는 교육전문직의 선발, 임용, 전문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교육전문직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교육전문직의 선발 및 임용에 대한 교원의 지각,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7개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410부를 배부하여 400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39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빈도(명) | 백분율(%) |
|------|--------|--------|
| 직 위 | 교사 | 261 |
| | 부장교사 | 134 |
| 교육경력 | 10년 이하 | 70 |
| | 11~20년 | 172 |
| | 21~30년 | 141 |
| | 31년 이상 | 12 |
| 학 위 | 학사 | 226 |
| | 석사 | 169 |
| 성 별 | 남자 | 224 |
| | 여자 | 171 |
| 학교급 | 중학교 | 200 |
| | 고등학교 | 195 |
| 계 | 395 | 100.0 |

총 395명 중 성별로는 일반교사가 66.1%로, 부장교사 33.9%보다 많았다.

교육경력별로는 11~20년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1~30년 35.7%, 10년 이하 17.7%, 31년 이상 3.0% 순으로 나타났다. 학위별로는 학사가 57.2%로 석사 42.8%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56.7%로, 여자교사가 43.3%보다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 50.6%, 고등학교 교사 49.4%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2. 조사도구

제주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임용전형규정을 참조하고, 일선 중학교 교사 및 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1차 제작된 설문지를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현행 교육전문직에 대한 교사의 인식 6문항, 교육전문직의 선발 및 임용에 대한 교사의 지각 13문항,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방안 7문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직위와 교육경력, 학위, 성별, 학교급별에 따라 현행 교육전문직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육전문직 선발 및 임용,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선발방법,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χ^2 통계치를 이용한 교차분석,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현행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식

1) 교육전문직 임용 기준

(1) 교육전문직 임용 기준

최근 10년 간 실시한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임용기준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최근 10년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은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78.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선발고사 성적 순위로 17.0%, 능력 위주로 2.5%, 현장실무 경험이 많은 순위로 2.0%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은 선발고사 성적 순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가 일반교사보다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6.07$, $p<.01$).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최근 10년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은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고,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선발고사 성적 순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6.87$, $p<.001$).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은 선발고사 성적 순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으며, 학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71$, $p<.05$). 성별로는 남자교

사가 여자교사보다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은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선발고사 성적 순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21.73$, $p<.001$).

<표 IV-1> 교육전문직 임용 기준

| 구 분 | | 교육감이 재량대로 | 선발고사 성적 순위로 | 능력 위주로 | 현장 실무 경험이 많은 순위로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190 (72.8) | 58 (22.2) | 7 (2.7) | 6 (2.3) | 261 (66.1) | 16.07** (3) |
| | 부장교사 | 120 (89.6) | 9 (6.7) | 3 (2.2) | 2 (1.5)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38 (54.3) | 26 (37.1) | 5 (7.1) | 1 (1.4) | 70 (17.7) | 36.87*** (6) |
| | 11~20년 | 139 (80.8) | 27 (15.7) | 3 (1.7) | 3 (1.7) | 172 (43.5) | |
| | 21년 이상 | 133 (86.9) | 14 (9.2) | 2 (1.3) | 4 (2.6) | 153 (38.7) | |
| 학위 | 학사 | 165 (73.0) | 49 (21.7) | 7 (3.1) | 5 (2.2) | 226 (57.2) | 9.71* (3) |
| | 석사 | 145 (85.8) | 18 (10.7) | 3 (1.8) | 3 (1.8) | 169 (42.8) | |
| 성별 | 남자 | 191 (85.3) | 21 (9.4) | 6 (2.7) | 6 (2.7) | 224 (56.7) | 21.73*** (3) |
| | 여자 | 119 (69.6) | 46 (26.9) | 4 (2.3) | 2 (1.2)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154 (77.0) | 40 (20.0) | 5 (2.5) | 1 (0.5) | 200 (50.6) | 6.97 (3) |
| | 고등학교 | 156 (80.0) | 27 (13.8) | 5 (2.6) | 7 (3.6) | 195 (49.4) | |
| 계 | | 310 (78.5) | 67 (17.0) | 10 (2.5) | 8 (2.0) | 395 (100.0) | |

* $p<.05$, ** $p<.01$, *** $p<.001$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은 선발고사 성적 순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교사들이 최근 10년 간 실시한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임용은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으며, 부장교사와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석사학위 교사, 그리고 남자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은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감 재량의 기준에 대한 인식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에 있어 이루어진 교육감 재량 기준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에 있어 교육감이 친분 위주로 교육전문직을 임용하였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순위로 34.2%, 능력 위주로 13.9%, 경력 위주로 3.2%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에 있어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순위로 임용하였다고 인식하였고, 친분 위주로 교육전문직을 임용하였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에 있어 능력 위주로 임용하였다고 인식하였고,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교육감이 친분 위주로 교육전문직을 임용하였다고 인식하였으나 교육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에 있어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순위로 임용하였

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가 학사학위 교사보다 친분 위주로 교육전문직을 임용하였다고 인식하였으며, 학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25, p<.05$).

<표 IV-2> 교육감 재량의 기준에 대한 인식

| 구 분 | | 교육감 선거에 도움 준 순위로 | 능력 위주로 | 경력 위주로 | 친분 위주로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68 (35.8) | 30 (15.8) | 9 (4.7) | 83 (43.7) | 190 (61.3) | 7.69 (3) |
| | 부장교사 | 38 (31.7) | 13 (10.8) | 1 (0.8) | 68 (56.7) | 120 (38.7)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12 (31.6) | 9 (23.7) | 2 (5.3) | 15 (39.5) | 38 (12.3) | 8.06 (6) |
| | 11~20년 | 45 (32.4) | 21 (15.1) | 6 (4.3) | 67 (48.2) | 139 (44.8) | |
| | 21년 이상 | 49 (36.8) | 13 (9.8) | 2 (1.5) | 69 (51.9) | 133 (42.9) | |
| 학위 | 학사 | 60 (36.4) | 30 (18.2) | 4 (2.4) | 71 (43.0) | 165 (53.2) | 8.25* (3) |
| | 석사 | 46 (31.7) | 13 (9.0) | 6 (4.1) | 80 (55.2) | 145 (46.8) | |
| 성별 | 남자 | 69 (36.1) | 21 (11.0) | 6 (3.1) | 95 (49.7) | 191 (61.6) | 3.63 (3) |
| | 여자 | 37 (31.1) | 22 (18.5) | 4 (3.4) | 56 (47.1) | 119 (38.4) | |
| 학교급 | 중학교 | 46 (29.9) | 20 (13.0) | 5 (3.2) | 83 (53.9) | 154 (49.7) | 3.54 (3) |
| | 고등학교 | 60 (38.5) | 23 (14.7) | 5 (3.2) | 68 (43.6) | 156 (50.3) | |
| 계 | | 106 (34.2) | 43 (13.9) | 10 (3.2) | 151 (48.7) | 310 (100.0) | |

* $p<.05$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에 있어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순위로 임용하였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능력 위주로 교육전문직을 임용하였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별로는 중

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에 있어 교육감이 친분 위주로 교육전문직을 임용하였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순위로 임용하였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에 있어 교육감이 친분 위주로 교육전문직을 임용하였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석사학위 교사가 학사학위 교사보다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에 있어 교육감이 친분 위주로 교육전문직을 임용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임용의 공정성이 선발고사 응시인원에 미치는 영향

(1) 교육전문직 임용의 공정성이 선발고사 응시인원에 미치는 영향

교육전문직 임용의 공정성이 선발고사 응시인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전체 평균이 2.84로, 교사들은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위별로는 부장교사가 일반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15, p<.05$). 교육경력별로는 11~20년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으나 교육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와 석사학위 교사가 별다른 차이 없이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교육전문직 임용의 공정성이 선발고사 응시인원에 미치는 영향

| 구 분 | | N | Mean | SD | t(F) |
|------|--------|-----|------|------|--------|
| 직 위 | 교사 | 261 | 2.79 | 0.71 | -2.15* |
| | 부장교사 | 134 | 2.95 | 0.69 | |
| 교육경력 | 10년 이하 | 70 | 2.87 | 0.68 | 0.26 |
| | 11~20년 | 172 | 2.81 | 0.72 | |
| | 21년 이상 | 153 | 2.86 | 0.70 | |
| 학 위 | 학사 | 226 | 2.84 | 0.67 | -0.22 |
| | 석사 | 169 | 2.85 | 0.75 | |
| 성 별 | 남자 | 224 | 2.86 | 0.71 | 0.60 |
| | 여자 | 171 | 2.82 | 0.69 | |
| 학교급 | 중학교 | 200 | 2.86 | 0.69 | 0.34 |
| | 고등학교 | 195 | 2.83 | 0.72 | |
| 전 체 | | 395 | 2.84 | 0.70 | |

* p<.05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별다른 차이 없이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였으며, 부장교사가 일반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전문직 임용의 공정성이 선발고사 응시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승진 기회가 많아서

<표 IV-4> 교육전문직 임용의 공정성이 선발고사 응시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 구 분 | | 승진 기회가 많아서 | 인성적 자질이 있어서 | 전문적 자질이 있어서 | 경영적 자질이 있어서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117 (66.1) | 2 (1.1) | 57 (32.2) | 1 (0.6) | 177 (62.3) | 11.06* (3) |
| | 부장교사 | 87 (81.3) | 3 (2.8) | 16 (15.0) | 1 (0.9) | 107 (37.7)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29 (56.9) | - | 22 (43.1) | - | 51 (18.0) | 18.62** (6) |
| | 11~20년 | 80 (68.4) | 2 (1.7) | 33 (28.2) | 2 (1.7) | 117 (41.2) | |
| | 21년 이상 | 95 (81.9) | 3 (2.6) | 18 (15.5) | - | 116 (40.8) | |
| 학위 | 학사 | 111 (68.5) | 2 (1.2) | 48 (29.6) | 1 (0.6) | 162 (57.0) | 3.47 (3) |
| | 석사 | 93 (76.2) | 3 (2.5) | 25 (20.5) | 1 (0.8) | 122 (43.0) | |
| 성별 | 남자 | 126 (75.9) | 4 (2.4) | 34 (20.5) | 2 (1.2) | 166 (58.5) | 7.54 (3) |
| | 여자 | 78 (66.1) | 1 (0.8) | 39 (33.1) | - | 118 (41.5) | |
| 학교급 | 중학교 | 108 (75.0) | 3 (2.1) | 32 (22.2) | 1 (0.7) | 144 (50.7) | 1.96 (3) |
| | 고등학교 | 96 (68.6) | 2 (1.4) | 41 (29.3) | 1 (0.7) | 140 (49.3) | |
| 계 | | 204 (71.8) | 5 (1.8) | 73 (25.7) | 2 (0.7) | 284 (100.0) | |

* p<.05, ** p<.01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7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문적 자질이 있어서 25.7%, 인성적 자질이 있어서 1.8%, 경영적 자질이 있어서 0.7%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전문적 자질이 있어서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승진 기회가 많아서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1.06$, $p<.05$).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승진 기회가 많아서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였고,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전문적 자질이 있어서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62$, $p<.01$).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전문적 자질이 있어서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승진 기회가 많아서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승진 기회가 많아서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전문적 자질이 있어서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승진 기회가 많아서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전문적 자질이 있어서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였으나 학교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승진 기회가 많아서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였으며, 부장교사와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승진 기회가 많아서 선

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전문직 장학활동 수행상 문제점

교육전문직 장학활동 수행상 문제점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 장학활동 수행상 문제점은 장학 요원 부족과 장학요원 자질의 부족, 경제적 대우 미흡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학요원의 자질부족 34.9%, 장학 요원 부족 14.9%, 경제적 대우 미흡 1.8%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장학활동 수행상 문제점은 장학 요원 부족과 장학요원 자질의 부족, 경제적 대우 미흡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장학요원의 자질부족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교육전문직 장학활동 수행상 문제점은 장학 요원 부족과 장학요원 자질의 부족, 경제적 대우 미흡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인식하였고, 21년 이상인 교사가 20년 이하인 교사보다 장학요원의 자질부족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장학활동 수행상 문제점은 장학 요원 부족에 있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장학요원의 자질부족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학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장학활동 수행상 문제점은 장학요원의 자질부족에 있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장학 요원 부족과 장학요원 자질의 부족, 경제적 대우 미흡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 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장학활동 수행상 문제점은 장학 요원 부족과 장학요원 자질의 부족, 경제적 대우 미흡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장학요원의 지질부족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5> 교육전문직 장학활동 수행상 문제점

| 구 분 | | 장학 요원수 부족 | 장학요원의 자질부족 | 경제적 대우 미흡 | ① + ② + ③ 의 복합 요인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36 (13.8) | 86 (33.0) | 6 (2.3) | 133 (51.0) | 261 (66.1) | 3.83 (3) |
| | 부장교사 | 23 (17.2) | 52 (38.8) | 1 (0.7) | 58 (43.3)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7 (10.0) | 23 (32.9) | - | 40 (57.1) | 70 (17.7) | 7.33 (6) |
| | 11~20년 | 32 (18.6) | 55 (32.0) | 4 (2.3) | 81 (47.1) | 172 (43.5) | |
| | 21년 이상 | 20 (13.1) | 60 (39.2) | 3 (2.0) | 70 (45.8) | 153 (38.7) | |
| 학위 | 학사 | 40 (17.7) | 74 (32.7) | 4 (1.8) | 108 (47.8) | 226 (57.2) | 3.46 (3) |
| | 석사 | 19 (11.2) | 64 (37.9) | 3 (1.8) | 83 (49.1) | 169 (42.8) | |
| 성별 | 남자 | 37 (16.5) | 84 (37.5) | 4 (1.8) | 99 (44.2) | 224 (56.7) | 3.69 (3) |
| | 여자 | 22 (12.9) | 54 (31.6) | 3 (1.8) | 92 (53.8)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31 (15.5) | 61 (30.5) | 4 (2.0) | 104 (52.0) | 200 (50.6) | 3.60 (3) |
| | 고등학교 | 28 (14.4) | 77 (39.5) | 3 (1.5) | 87 (44.6) | 195 (49.4) | |
| 계 | | 59 (14.9) | 138 (34.9) | 7 (1.8) | 191 (48.4) | 395 (100.0) | |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전문직 장학활동 수행상 가장 큰 문제점은 장학 요원 부족과 장학요원 자질의 부족, 경제적 대우 미흡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와 교육경력, 학위, 성별, 그리고 학교급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자격기준의 불합리와 현직연수의 미흡, 선발이후 임용 전 연수의 미흡 등의 복합적 요인이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5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격기준의 불합리 27.3%, 현직 연수의 미흡 12.7%, 선발이후 임용 전 연수의 미흡 5.6%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자격기준의 불합리와 현직연수의 미흡, 선발이후 임용 전 연수의 미흡 등의 복합적 요인이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이라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선발이후 임용 전 연수의 미흡 등의 복합적 요인이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자격기준의 불합리가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이라고 인식하였고, 11~20년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현직 연수의 미흡이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교육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자격기준의 불합리가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이라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현직연수의 미흡이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자격기준의 불합리가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이라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자격기준의 불합리와 현직연수의 미흡, 선발이후

임용 전 연수의 미흡 등의 복합적 요인이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6>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

| 구 분 | | 자격기준 의 불합리 | 현직 연수의 미흡 | 선발 이후 임용 전 연수의 미흡 | ① + ② + ③ 의 복합 요인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71 (27.2) | 33 (12.6) | 12 (4.6) | 145 (55.6) | 261 (66.1) | 1.49 (3) |
| | 부장교사 | 37 (27.6) | 17 (12.7) | 10 (7.5) | 70 (52.2)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18 (25.7) | 8 (11.4) | 4 (5.7) | 40 (57.1) | 70 (17.7) | 4.44 (6) |
| | 11~20년 | 45 (26.2) | 28 (16.3) | 8 (4.7) | 91 (52.9) | 172 (43.5) | |
| | 21년 이상 | 45 (29.4) | 14 (9.2) | 10 (6.5) | 84 (54.9) | 153 (38.7) | |
| 학위 | 학사 | 65 (28.8) | 26 (11.5) | 13 (5.8) | 122 (54.0) | 226 (57.2) | 1.00 (3) |
| | 석사 | 43 (25.4) | 24 (14.2) | 9 (5.3) | 93 (55.0) | 169 (42.8) | |
| 성별 | 남자 | 67 (29.9) | 29 (12.9) | 15 (6.7) | 113 (50.4) | 224 (56.7) | 3.97 (3) |
| | 여자 | 41 (24.0) | 21 (12.3) | 7 (4.1) | 102 (59.6)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43 (21.5) | 31 (15.5) | 11 (5.5) | 115 (57.5) | 200 (50.6) | 8.35* (3) |
| | 고등학교 | 65 (33.3) | 19 (9.7) | 11 (5.6) | 100 (51.3) | 195 (49.4) | |
| 계 | | 108 (27.3) | 50 (12.7) | 22 (5.6) | 215 (54.4) | 395 (100.0) | |

* $p < .05$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자격기준의 불합리와 현직연수의 미흡, 선발이후 임용 전 연수의 미흡 등의 복합적 요인이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이라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자격기준의 불합리가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학교

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35, p<.05$).

이상과 같이 자격기준의 불합리와 현직연수의 미흡, 선발이후 임용 전 연수의 미흡 등의 복합적 요인이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자격기준의 불합리와 현직연수의 미흡, 선발이후 임용 전 연수의 미흡 등의 복합적 요인이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전문직의 선발 및 임용

1) 교육전문직 선발시 교육경력

교육전문직 선발시 타당한 교육경력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 선발시 교육경력은 10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년 이상 36.5%, 20년 이상 18.0%, 5년 이상 2.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없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2.3%로 매우 적었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교육경력은 10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15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1.76, p<.001$).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교육전문직 선발시 교육경력은 10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15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0.61, p<.001$).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교육

경력은 10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교육경력은 20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10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학교급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7> 교육전문직 선발시 교육경력

| 구 분 | |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20년 이상 | 필요 없다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10 (3.8) | 130 (49.8) | 85 (32.6) | 30 (11.5) | 6 (2.3) | 261 (66.1) | 41.76*** (4) |
| | 부장교사 | - | 31 (23.1) | 59 (44.0) | 41 (30.6) | 3 (2.2)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8 (11.4) | 48 (68.6) | 8 (11.4) | 4 (5.7) | 2 (2.9) | 70 (17.7) | 90.61*** (8) |
| | 11~20년 | 2 (1.2) | 76 (44.2) | 69 (40.1) | 20 (11.6) | 5 (2.9) | 172 (43.5) | |
| | 21년 이상 | - | 37 (24.2) | 67 (43.8) | 47 (30.7) | 2 (1.3) | 153 (38.7) | |
| 학위 | 학사 | 8 (3.5) | 101 (44.7) | 72 (31.9) | 39 (17.3) | 6 (2.7) | 226 (57.2) | 7.67 (4) |
| | 석사 | 2 (1.2) | 60 (35.5) | 72 (42.6) | 32 (18.9) | 3 (1.8) | 169 (42.8) | |
| 성별 | 남자 | 5 (2.2) | 76 (33.9) | 93 (41.5) | 46 (20.5) | 4 (1.8) | 224 (56.7) | 12.18* (4) |
| | 여자 | 5 (2.9) | 85 (49.7) | 51 (29.8) | 25 (14.6) | 5 (2.9)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2 (1.0) | 75 (37.5) | 75 (37.5) | 41 (20.5) | 7 (3.5) | 200 (50.6) | 9.02 (4) |
| | 고등학교 | 8 (4.1) | 86 (44.1) | 69 (35.4) | 30 (15.4) | 2 (1.0) | 195 (49.4) | |
| 계 | | 10 (2.5) | 161 (40.8) | 144 (36.5) | 71 (18.0) | 9 (2.3) | 395 (100.0) | |

* p<.05, *** p<.001

이상과 같이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육전문직 선발시 교육경력은 10년 이상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부장교사와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남자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교육경력은 15년 이상이 타당

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전문직 선발시 학위제한

교육전문직 선발시 타당한 학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 선발시 학위는 석사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사 이상 21.3%, 박사 이상 2.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없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30.1%를 차지하였다.

직위별로는 부장교사의 절반 이상은 석사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교사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지만 학력제한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44$, $p<.01$). 교육경력별로는 20년 이하 교사가 21년 이상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학위는 필요없다고 인식하였고, 21년 이상 교사는 20년 이하 교사보다 석사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10$, $p<.01$).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학위는 필요없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석사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76.50$, $p<.001$).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학위는 석사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필요없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4.14$, $p<.001$).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학위는 석사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8> 교육전문직 선발시 학위제한

| 구 분 | | 학사 이상 | 석사 이상 | 박사 이상 | 필요 없다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61 (23.4) | 105 (40.2) | 9 (3.4) | 86 (33.0) | 261 (66.1) | 14.44** (3) |
| | 부장교사 | 23 (17.2) | 78 (58.2) | - | 33 (24.6)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13 (18.6) | 29 (41.4) | 5 (7.1) | 23 (32.9) | 70 (17.7) | 18.10** (6) |
| | 11~20년 | 39 (22.7) | 70 (40.7) | 4 (2.3) | 59 (34.3) | 172 (43.5) | |
| | 21년 이상 | 32 (20.9) | 84 (54.9) | - | 37 (24.2) | 153 (38.7) | |
| 학위 | 학사 | 67 (29.6) | 62 (27.4) | 6 (2.7) | 91 (40.3) | 226 (57.2) | 76.50*** (3) |
| | 석사 | 17 (10.1) | 121 (71.6) | 3 (1.8) | 28 (16.6) | 169 (42.8) | |
| 성별 | 남자 | 43 (19.2) | 123 (54.9) | - | 58 (25.9) | 224 (56.7) | 24.14*** (3) |
| | 여자 | 41 (24.0) | 60 (35.1) | 9 (5.3) | 61 (35.7)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43 (21.5) | 97 (48.5) | 2 (1.0) | 58 (29.0) | 200 (50.6) | 3.50 (3) |
| | 고등학교 | 41 (21.0) | 86 (44.1) | 7 (3.6) | 61 (31.3) | 195 (49.4) | |
| 계 | | 84 (21.3) | 183 (46.3) | 9 (2.3) | 119 (30.1) | 395 (100.0) | |

** p<.01, *** p<.001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전문직 선발시 학위는 석사 이상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부장교사와 21년 이상 교사, 석사학위 교사, 그리고 남자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학위는 석사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전문직 선발시 근무성적

교육전문직 선발시 타당한 근무성적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

직 선발시 근무성적은 “우”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 이상 12.2% “미” 이상 9.6%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없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21.8%를 차지하였다.

<표 IV-9> 교육전문직 선발시 근무성적

| 구 분 | | “수” 이상 | “우” 이상 | “미” 이상 | 필요 없다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15 (5.7) | 152 (58.2) | 29 (11.1) | 65 (24.9) | 261 (66.1) | 31.65*** (3) |
| | 부장교사 | 33 (24.6) | 71 (53.0) | 9 (6.7) | 21 (15.7)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5 (7.1) | 42 (60.0) | 11 (15.7) | 12 (17.1) | 70 (17.7) | 25.72*** (6) |
| | 11~20년 | 11 (6.4) | 98 (57.0) | 14 (8.1) | 49 (28.5) | 172 (43.5) | |
| | 21년 이상 | 32 (20.9) | 83 (54.2) | 13 (8.5) | 25 (16.3) | 153 (38.7) | |
| 학위 | 학사 | 20 (8.8) | 126 (55.8) | 22 (9.7) | 58 (25.7) | 226 (57.2) | 8.47* (3) |
| | 석사 | 28 (16.6) | 97 (57.4) | 16 (9.5) | 28 (16.6) | 169 (42.8) | |
| 성별 | 남자 | 35 (15.6) | 114 (50.9) | 22 (9.8) | 53 (23.7) | 224 (56.7) | 8.84* (3) |
| | 여자 | 13 (7.6) | 109 (63.7) | 16 (9.4) | 33 (19.3)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30 (15.0) | 113 (56.5) | 16 (8.0) | 41 (20.5) | 200 (50.6) | 4.11 (3) |
| | 고등학교 | 18 (9.2) | 110 (56.4) | 22 (11.3) | 45 (23.1) | 195 (49.4) | |
| 계 | | 48 (12.2) | 223 (56.5) | 38 (9.6) | 86 (21.8) | 395 (100.0) | |

* p<.05, *** p<.001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근무성적은 “우”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수”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1.65$, $p<.001$). 교육경력별로는 교육전문직 선발시 근무성적은 “우” 이상이 타당

하다고 인식하였고, 21년 이상 교사가 20년 이하 교사보다 “수”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5.72$, $p<.001$).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근무성적은 필요없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수” 이상과 “우”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47$, $p<.05$).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근무성적은 “수”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우”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84$, $p<.05$).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근무성적은 “수”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미”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교육전문직 선발시 근무성적은 “우” 이상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일반교사와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석사학위 교사, 그리고 여자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근무성적은 “우”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육전문직 선발시 소지자격

교육전문직 선발시 타당한 소지자격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 선발시 소지자격은 1급 정교사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75.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교감 자격 이상 14.7%, 교감 경력자 이상 2.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없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7.1%를 차지하였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소지자격은 1급

<표 IV-10> 교육전문직 선발시 소지자격

| 구 분 | | 1급 정교사 이상 | 교감자격 이상 | 교감 경력자 이상 | 필요 없다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206 (78.9) | 23 (8.8) | 9 (3.4) | 23 (8.8) | 261 (66.1) | 24.90*** (3) |
| | 부장교사 | 93 (69.4) | 35 (26.1) | 1 (0.7) | 5 (3.7)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54 (77.1) | 6 (8.6) | 2 (2.9) | 8 (11.4) | 70 (17.7) | 23.00** (6) |
| | 11~20년 | 141 (82.0) | 14 (8.1) | 4 (2.3) | 13 (7.6) | 172 (43.5) | |
| | 21년 이상 | 104 (68.0) | 38 (24.8) | 4 (2.6) | 7 (4.6) | 153 (38.7) | |
| 학위 | 학사 | 170 (75.2) | 23 (10.2) | 10 (4.4) | 23 (10.2) | 226 (57.2) | 21.91*** (3) |
| | 석사 | 129 (76.3) | 35 (20.7) | - | 5 (3.0) | 169 (42.8) | |
| 성별 | 남자 | 164 (73.2) | 39 (17.4) | 4 (1.8) | 17 (7.6) | 224 (56.7) | 4.36 (3) |
| | 여자 | 135 (78.9) | 19 (11.1) | 6 (3.5) | 11 (6.4)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155 (77.5) | 28 (14.0) | 5 (2.5) | 12 (6.0) | 200 (50.6) | 0.98 (3) |
| | 고등학교 | 144 (73.8) | 30 (15.4) | 5 (2.6) | 16 (8.2) | 195 (49.4) | |
| 계 | | 299 (75.7) | 58 (14.7) | 10 (2.5) | 28 (7.1) | 395 (100.0) | |

** p<.01, *** p<.001

정교사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교감자격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24.90$, $p<.001$). 교육경력별로는 11~20년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소지자격은 1급 정교사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필요없다고, 21년 이상 교사는 20년 이하 교사보다 교감자격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23.00$, $p<.01$).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소지자
격은 필요없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1급 정교
사 이상과 교감자격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위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chi^2=21.91, p<.001$).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소지자격은 교감
자격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1급 정교사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소지자격은 1급 정교
사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전문직 선발시 소지자격은 1급 정교사 이상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일반교사와 교육경력이 11~20년인 교사,
석사학위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소지자격은 1급 정교사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여교사의 교육전문직 선발

여교사의 교육전문직 선발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 선발시
남, 여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 여 비율을 적용한다 34.9%, 잘 모르겠다 9.9%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사 및 부장교사 모두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쪽으로 찬성하고 있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교육전문직 선발시 남, 여 비율을 적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남, 여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0.89$, $p<.001$). 학위별로는 석사학위 교사가 학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남, 여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11> 여교사의 교육전문직 선발

| 구 분 | | 남, 여 비율을 적용한다 | 남, 여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잘 모르겠다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96 (36.8) | 135 (51.7) | 30 (11.5) | 261 (66.1) | 4.47 (2) |
| | 부장교사 | 42 (31.3) | 83 (61.9) | 9 (6.7)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35 (50.0) | 24 (34.3) | 11 (15.7) | 70 (17.7) | 20.89*** (4) |
| | 11~20년 | 63 (36.6) | 92 (53.5) | 17 (9.9) | 172 (43.5) | |
| | 21년 이상 | 40 (26.1) | 102 (66.7) | 11 (7.2) | 153 (38.7) | |
| 학위 | 학사 | 81 (35.8) | 119 (52.7) | 26 (11.5) | 226 (57.2) | 2.16 (2) |
| | 석사 | 57 (33.7) | 99 (58.6) | 13 (7.7) | 169 (42.8) | |
| 성별 | 남자 | 54 (24.1) | 149 (66.5) | 21 (9.4) | 224 (56.7) | 29.53*** (2) |
| | 여자 | 84 (49.1) | 69 (40.4) | 18 (10.5)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70 (35.0) | 105 (52.5) | 25 (12.5) | 200 (50.6) | 3.36 (2) |
| | 고등학교 | 68 (34.9) | 113 (57.9) | 14 (7.2) | 195 (49.4) | |
| 계 | | 138 (34.9) | 218 (55.2) | 39 (9.9) | 395 (100.0) | |

*** $p<.001$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남, 여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남, 여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9.53$, $p<.001$).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남, 여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전문직 선발시 남, 여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남자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남, 여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교육전문직 선발시 연구성적

교육전문직 선발시 연구성적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 선발시 연구성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9.7%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34.7%)보다 많았다.

직위별로는 부장교사가 일반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연구성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직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경력별로는 10년 이하 교사가 11년 이상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연구성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15, p<.01$).

학위별로는 석사학위 교사가 학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연구성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연구성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7.20, p<.05$).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연구성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12> 교육전문직 선발시 연구성적

| 구 분 | |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 잘 모르겠다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150 (57.5) | 92 (35.2) | 19 (7.3) | 261 (66.1) | 4.78 (2) |
| | 부장교사 | 86 (64.2) | 45 (33.6) | 3 (2.2)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47 (67.1) | 15 (21.4) | 8 (11.4) | 70 (17.7) | 14.15** (4) |
| | 11~20년 | 94 (54.7) | 67 (39.0) | 11 (6.4) | 172 (43.5) | |
| | 21년 이상 | 95 (62.1) | 55 (35.9) | 3 (2.0) | 153 (38.7) | |
| 학위 | 학사 | 127 (56.2) | 87 (38.5) | 12 (5.3) | 226 (57.2) | 3.39 (2) |
| | 석사 | 109 (64.5) | 50 (29.6) | 10 (5.9) | 169 (42.8) | |
| 성별 | 남자 | 132 (58.9) | 85 (37.9) | 7 (3.1) | 224 (56.7) | 7.20* (2) |
| | 여자 | 104 (60.8) | 52 (30.4) | 15 (8.8)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127 (63.5) | 60 (30.0) | 13 (6.5) | 200 (50.6) | 4.15 (2) |
| | 고등학교 | 109 (55.9) | 77 (39.5) | 9 (4.6) | 195 (49.4) | |
| 계 | | 236 (59.7) | 137 (34.7) | 22 (5.6) | 395 (100.0) | |

* p<.05, ** p<.01

이상과 같이 교육전문직 선발시 연구성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보다 많았으며, 교육경력이 10년 이하인 교사와 여자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연구성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

(1)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9.7%,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35.2%보다 많았다.

<표 IV-13>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

| 구 분 | |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 잘 모르겠다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139 (53.3) | 106 (40.6) | 16 (6.1) | 261 (66.1) | 13.58** (2) |
| | 부장교사 | 97 (72.4) | 33 (24.6) | 4 (3.0)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35 (50.0) | 25 (35.7) | 10 (14.3) | 70 (17.7) | 37.93*** (4) |
| | 11~20년 | 86 (50.0) | 80 (46.5) | 6 (3.5) | 172 (43.5) | |
| | 21년 이상 | 115 (75.2) | 34 (22.2) | 4 (2.6) | 153 (38.7) | |
| 학위 | 학사 | 131 (58.0) | 80 (35.4) | 15 (6.6) | 226 (57.2) | 2.87 (2) |
| | 석사 | 105 (62.1) | 59 (34.9) | 5 (3.0) | 169 (42.8) | |
| 성별 | 남자 | 144 (64.3) | 74 (33.0) | 6 (2.7) | 224 (56.7) | 8.28* (2) |
| | 여자 | 92 (53.8) | 65 (38.0) | 14 (8.2)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124 (62.0) | 64 (32.0) | 12 (6.0) | 200 (50.6) | 2.22 (2) |
| | 고등학교 | 112 (57.4) | 75 (38.5) | 8 (4.1) | 195 (49.4) | |
| 계 | | 236 (59.7) | 139 (35.2) | 20 (5.1) | 395 (100.0) | |

* p<.05, ** p<.01, *** p<.001

직위별로는 부장교사가 일반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3.58$, p<.01). 교육경력별로는 21년 이상 교사가 20년 이하 교사보다 교

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7.93$, $p<.001$).

학위별로는 석사학위 교사가 학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28$, $p<.05$).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학교급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보다 많았으며, 부장교사와 교육경력 21년 이상인 교사, 그리고 남자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전문직 선발시 타당한 부장교사 경력

교육전문직 선발시 타당한 부장교사 경력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은 5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년 이상 29.2%, 7년 이상 16.9%, 2년 이상 5.9%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은 3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5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68$, $p<.01$). 교육경력별로는 20년 이하 교사가 21년 이상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은 3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교육

<표 IV-14> 교육전문직 선발시 타당한 부장교사 경력

| 구 분 | | 2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7년 이상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13 (9.4) | 48 (34.5) | 60 (43.2) | 18 (12.9) | 139 (58.9) | 14.68** (3) |
| | 부장교사 | 1 (1.0) | 21 (21.6) | 53 (54.6) | 22 (22.7) | 97 (41.1)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7 (20.0) | 13 (37.1) | 14 (40.0) | 1 (2.9) | 35 (14.8) | 33.25*** (6) |
| | 11~20년 | 5 (5.8) | 34 (39.5) | 35 (40.7) | 12 (14.0) | 86 (36.4) | |
| | 21년 이상 | 2 (1.7) | 22 (19.1) | 64 (55.7) | 27 (23.5) | 115 (48.7) | |
| 학위 | 학사 | 10 (7.6) | 37 (28.2) | 63 (48.1) | 21 (16.0) | 131 (55.5) | 1.69 (3) |
| | 석사 | 4 (3.8) | 32 (30.5) | 50 (47.6) | 19 (18.1) | 105 (44.5) | |
| 성별 | 남자 | 4 (2.8) | 37 (25.7) | 74 (51.4) | 29 (20.1) | 144 (61.0) | 10.95* (3) |
| | 여자 | 10 (10.9) | 32 (34.8) | 39 (42.4) | 11 (12.0) | 92 (39.0) | |
| 학교급 | 중학교 | 4 (3.2) | 33 (26.6) | 60 (48.4) | 27 (21.8) | 124 (52.5) | 7.45 (3) |
| | 고등학교 | 10 (8.9) | 36 (32.1) | 53 (47.3) | 13 (11.6) | 112 (47.5) | |
| 계 | | 14 (5.9) | 69 (29.2) | 113 (47.9) | 40 (16.9) | 236 (100.0) | |

* p<.05, ** p<.01, *** p<.001

경력이 많을수록 5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3.25$, p<.001).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은 2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3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학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은 5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3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10.95$, $p<.05$).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은 7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3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은 5년 이상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부장교사와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남자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부장교사 경력은 5년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선발방법

1) 교육전문직 선발방법

(1) 교육전문직 선발방법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의 적합한 선발방법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교육전문직 선발방법

(복수응답)

| 구 분 | 빈도(명) | 백분율(%) |
|-----------|-------|--------|
| 서류전형 | 216 | 25.1 |
| 면접 | 220 | 25.6 |
| 필답고사 | 265 | 30.8 |
| 수업기술 | 92 | 10.7 |
| 컴퓨터 조작 능력 | 68 | 7.9 |
| 계 | 861 | 100.0 |

<표 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의 선발방법은 필답고사가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면접 25.6%, 서류전형 25.1%, 수업기술 10.7%, 컴퓨터 조작 능력 7.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의 선발방법은 필답고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전문직 선발시 필답고사 시험과목

교육전문직 선발시 필답고사 시험과목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 IV-16>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 선발시 필답고사 시험과목은 교양, 교육학, 현장실무가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양, 교육학 24.9%, 교양과 현장실무 14.0%, 현장실무 4.2%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필답고사 시험과목은 교양, 교육학, 현장실무가 적합하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교양과 현장실무, 교양, 교육학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3.81$, $p<.001$). 교육경력별로는 21년 이상 교사가 교육전문직 선발시 필답고사 시험과목은 교양, 교육학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고,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교양, 교육학, 현장실무가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0.63$, $p<.01$).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필답고사 시험과목은 교양, 교육학, 현장실무가 적합하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교사보다 교양, 교육학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7.80$, $p<.05$).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필답고사 시험과목은 교양, 교육학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교

양, 교육학, 현장실무가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9.96$, $p<.001$).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필답고사 시험과목은 교양과 현장실무가 적합하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교양, 교육학, 현장실무가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급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27$, $p<.05$).

<표 IV-16> 교육전문직 선발시 필답고사 시험과목

| 구 분 | | 교양과 현장 실무 | 교양, 교육학 | 현장실무 | 교양, 교육학, 현장실무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22 (12.5) | 30 (17.0) | 6 (3.4) | 118 (67.0) | 176 (66.4) | 23.81*** (3) |
| | 부장교사 | 15 (16.9) | 36 (40.4) | 5 (5.6) | 33 (37.1) | 89 (33.6)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3 (5.5) | 10 (18.2) | 1 (1.8) | 41 (74.5) | 55 (20.8) | 20.63** (6) |
| | 11~20년 | 24 (20.7) | 22 (19.0) | 7 (6.0) | 63 (54.3) | 116 (43.8) | |
| | 21년 이상 | 10 (10.6) | 34 (36.2) | 3 (3.2) | 47 (50.0) | 94 (35.5) | |
| 학위 | 학사 | 24 (15.9) | 32 (21.2) | 3 (2.0) | 92 (60.9) | 151 (57.0) | 7.80* (3) |
| | 석사 | 13 (11.4) | 34 (29.8) | 8 (7.0) | 59 (51.8) | 114 (43.0) | |
| 성별 | 남자 | 18 (12.9) | 46 (33.1) | 10 (7.2) | 65 (46.8) | 139 (52.5) | 19.96*** (3) |
| | 여자 | 19 (15.1) | 20 (15.9) | 1 (0.8) | 86 (68.3) | 126 (47.5) | |
| 학교급 | 중학교 | 22 (15.7) | 35 (25.0) | 10 (7.1) | 73 (52.1) | 140 (52.8) | 8.27* (3) |
| | 고등학교 | 15 (12.0) | 31 (24.8) | 1 (0.8) | 78 (62.4) | 125 (47.2) | |
| 계 | | 37 (14.0) | 66 (24.9) | 11 (4.2) | 151 (57.0) | 265 (100.0) | |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전문직 선발시 필답고사 시험과목은 교양, 교육학, 현장실무가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일반교사와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학사학위 교사, 여자교사,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필답고사 시험과목은 교양, 교육학, 현장실무가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전문직 선발인원

적합한 교육전문직 선발인원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7>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 선발인원은 소요 인원이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6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요인원의 2배수 28.6%, 응시 인원 모두 4.3%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와 부장교사 모두 별다른 차이 없이 교육전문직 선발인원은 소요 인원이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교육경력별로는 10년 이하 교사가 교육전문직 선발인원은 소요 인원의 2배수가 적합하다고 인식하였고, 11~20년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소요 인원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위별로는 석사학위 교사가 학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인원은 소요 인원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학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자교사와 여자교사가 별다른 차이 없이 교육전문직 선발인원은 소요 인원이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인원은 소요 인원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소요 인원의 2배수가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7> 교육전문직 선발인원

| 구 분 | | 소요 인원만 | 소요 인원의 2배수 | 응시 인원 모두 (서열순)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175 (67.0) | 75 (28.7) | 11 (4.2) | 261 (66.1) | 0.02 (2) |
| | 부장교사 | 90 (67.2) | 38 (28.4) | 6 (4.5)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42 (60.0) | 25 (35.7) | 3 (4.3) | 70 (17.7) | 4.55 (4) |
| | 11~20년 | 123 (71.5) | 44 (25.6) | 5 (2.9) | 172 (43.5) | |
| | 21년 이상 | 100 (65.4) | 44 (28.8) | 9 (5.9) | 153 (38.7) | |
| 학위 | 학사 | 148 (65.5) | 66 (29.2) | 12 (5.3) | 226 (57.2) | 1.51 (2) |
| | 석사 | 117 (69.2) | 47 (27.8) | 5 (3.0) | 169 (42.8) | |
| 성별 | 남자 | 151 (67.4) | 65 (29.0) | 8 (3.6) | 224 (56.7) | 0.68 (2) |
| | 여자 | 114 (66.7) | 48 (28.1) | 9 (5.3)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137 (68.5) | 51 (25.5) | 12 (6.0) | 200 (50.6) | 4.20 (2) |
| | 고등학교 | 128 (65.6) | 62 (31.8) | 5 (2.6) | 195 (49.4) | |
| 계 | | 265 (67.1) | 113 (28.6) | 17 (4.3) | 395 (100.0) | |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전문직 선발인원은 소요 인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와 교육경력, 학위, 성별, 그리고 학교급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기간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기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8>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2년 간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 간 37.7%, 3년 간 7.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기간

| 구 분 | | 1년간 | 2년간 | 3년간 | 필요 없다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97 (37.2) | 94 (36.0) | 24 (9.2) | 46 (17.6) | 261 (66.1) | 7.92* (3) |
| | 부장교사 | 52 (38.8) | 62 (46.3) | 7 (5.2) | 13 (9.7)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33 (47.1) | 25 (35.7) | 1 (1.4) | 11 (15.7) | 70 (17.7) | 9.59 (6) |
| | 11~20년 | 57 (33.1) | 68 (39.5) | 19 (11.0) | 28 (16.3) | 172 (43.5) | |
| | 21년 이상 | 59 (38.6) | 63 (41.2) | 11 (7.2) | 20 (13.1) | 153 (38.7) | |
| 학위 | 학사 | 87 (38.5) | 81 (35.8) | 23 (10.2) | 35 (15.5) | 226 (57.2) | 5.63 (3) |
| | 석사 | 62 (36.7) | 75 (44.4) | 8 (4.7) | 24 (14.2) | 169 (42.8) | |
| 성별 | 남자 | 82 (36.6) | 89 (39.7) | 17 (7.6) | 36 (16.1) | 224 (56.7) | 0.67 (3) |
| | 여자 | 67 (39.2) | 67 (39.2) | 14 (8.2) | 23 (13.5)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76 (38.0) | 83 (41.5) | 21 (10.5) | 20 (10.0) | 200 (50.6) | 10.66* (3) |
| | 고등학교 | 73 (37.4) | 73 (37.4) | 10 (5.1) | 39 (20.0) | 195 (49.4) | |
| 계 | | 149 (37.7) | 156 (39.5) | 31 (7.8) | 59 (14.9) | 395 (100.0) | |

* p<.05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필요없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2년 간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7.92$, $p<.05$). 교육경력별로는 10년 이하 교사가 11년 이상 교사보다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1년 간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고,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2년 간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3년 간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2년 간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학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필요없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1년 간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2년 간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필요없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66$, $p<.05$).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2년 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부장교사와 중학교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2년 간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합격자의 임용방법

바람직한 합격자의 임용방법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합격자의 임용은 직위와 상관없이 성적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위별 성적 순위대로 24.8%, 교육경력 순위대로 13.2%, 직위별 성별 성적 순위대로 9.6%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합격자의 임용은 직위와 상관없이 성적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직위별 성적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합격자의 임용은 직위와 상관없이 성적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교육경력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IV-19> 합격자의 임용방법

| 구 분 | | 직위와 상관없이 성적 순위대로 | 직위별 성적 순위대로 | 직위별 성별 성적 순위대로 | 교육경력 순위대로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144 (55.2) | 61 (23.4) | 28 (10.7) | 28 (10.7) | 261 (66.1) | 6.22 (3) |
| | 부장교사 | 63 (47.0) | 37 (27.6) | 10 (7.5) | 24 (17.9)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43 (61.4) | 17 (24.3) | 5 (7.1) | 5 (7.1) | 70 (17.7) | 16.36* (6) |
| | 11~20년 | 96 (55.8) | 41 (23.8) | 20 (11.6) | 15 (8.7) | 172 (43.5) | |
| | 21년 이상 | 68 (44.4) | 40 (26.1) | 13 (8.5) | 32 (20.9) | 153 (38.7) | |
| 학위 | 학사 | 123 (54.4) | 53 (23.5) | 14 (6.2) | 36 (15.9) | 226 (57.2) | 10.31* (3) |
| | 석사 | 84 (49.7) | 45 (26.6) | 24 (14.2) | 16 (9.5) | 169 (42.8) | |
| 성별 | 남자 | 112 (50.0) | 58 (25.9) | 19 (8.5) | 35 (15.6) | 224 (56.7) | 3.89 (3) |
| | 여자 | 95 (55.6) | 40 (23.4) | 19 (11.1) | 17 (9.9)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113 (56.5) | 37 (18.5) | 21 (10.5) | 29 (14.5) | 200 (50.6) | 8.67* (3) |
| | 고등학교 | 94 (48.2) | 61 (31.3) | 17 (8.7) | 23 (11.8) | 195 (49.4) | |
| 계 | | 207 (52.4) | 98 (24.8) | 38 (9.6) | 52 (13.2) | 395 (100.0) | |

* p<.05

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6.36$, $p<.05$).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합격자의 임용은 직위와 상관없이 성적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직위별 성별 성적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6.36$, $p<.05$).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합격자의 임용은 교육경력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직위와 상관없이 성적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합격자의 임용은 직위와 상관없이 성적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직위별 성적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67$, $p<.05$).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합격자의 임용은 직위와 상관없이 성적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학사학위 교사, 그리고 중학교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합격자의 임용은 직위와 상관없이 성적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방안

1)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 전직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 전직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표 IV-20>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 전직에 대해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전직이 좋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6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쉽게 전직하는 것이 좋다 16.5%, 전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9.1%,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 7.8%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 전직에 대해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전직이 좋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전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154$, $p<.05$).

<표 IV-20>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 전직

| 구 분 | | 쉽게 전직하는 것이 좋다 |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전직이 좋다 |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 | 전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43 (16.5) | 188 (72.0) | 18 (6.9) | 12 (4.6) | 261 (66.1) | 21.54*** (3) |
| | 부장교사 | 22 (16.4) | 75 (56.0) | 13 (9.7) | 24 (17.9)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9 (12.9) | 50 (71.4) | 6 (8.6) | 5 (7.1) | 70 (17.7) | 13.85* (6) |
| | 11~20년 | 27 (15.7) | 124 (72.1) | 13 (7.6) | 8 (4.7) | 172 (43.5) | |
| | 21년 이상 | 29 (19.0) | 89 (58.2) | 12 (7.8) | 23 (15.0) | 153 (38.7) | |
| 학위 | 학사 | 35 (15.5) | 156 (69.0) | 19 (8.4) | 16 (7.1) | 226 (57.2) | 3.38 (3) |
| | 석사 | 30 (17.8) | 107 (63.3) | 12 (7.1) | 20 (11.8) | 169 (42.8) | |
| 성별 | 남자 | 45 (20.1) | 131 (58.5) | 20 (8.9) | 28 (12.5) | 224 (56.7) | 16.53** (3) |
| | 여자 | 20 (11.7) | 132 (77.2) | 11 (6.4) | 8 (4.7)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25 (12.5) | 132 (66.0) | 17 (8.5) | 26 (13.0) | 200 (50.6) | 10.81* (3) |
| | 고등학교 | 40 (20.5) | 131 (67.2) | 14 (7.2) | 10 (5.1) | 195 (49.4) | |
| 계 | | 65 (16.5) | 263 (66.6) | 31 (7.8) | 36 (9.1) | 395 (100.0) | |

* $p<.05$, ** $p<.01$, *** $p<.001$

교육경력별로는 20년 이하 교사가 21년 이상 교사보다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 전직에 대해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전직이 좋다고 인식하였고,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전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3.85$, $p<.05$).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 전직에 대해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전직이 좋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

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전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 전직에 대해 전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전직이 좋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6.53$, $p<.01$).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 전직에 대해 전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전직이 좋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81$, $p<.05$).

이상과 같이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 전직에 대해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전직이 좋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일반교사와 교육경력이 20년 이하인 교사, 여자교사,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 전직에 대해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전직이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에 대한 인식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표 IV-21>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62.3%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22.5%보다 많았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와 부장교사가 모두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06$, $p<.01$).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와 석사학위 교사가 별다른 차이 없이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3.35, p<.01$).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1>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에 대한 인식

| 구 분 | |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 잘 모르겠다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164 (62.8) | 55 (21.1) | 42 (16.1) | 261 (66.1) | 1.18 (2) |
| | 부장교사 | 82 (61.2) | 34 (25.4) | 18 (13.4)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48 (68.6) | 4 (5.7) | 18 (25.7) | 70 (17.7) | 18.06** (4) |
| | 11~20년 | 107 (62.2) | 42 (24.4) | 23 (13.4) | 172 (43.5) | |
| | 21년 이상 | 91 (59.5) | 43 (28.1) | 19 (12.4) | 153 (38.7) | |
| 학위 | 학사 | 141 (62.4) | 44 (19.5) | 41 (18.1) | 226 (57.2) | 5.23 (2) |
| | 석사 | 105 (62.1) | 45 (26.6) | 19 (11.2) | 169 (42.8) | |
| 성별 | 남자 | 143 (63.8) | 59 (26.3) | 22 (9.8) | 224 (56.7) | 13.35** (2) |
| | 여자 | 103 (60.2) | 30 (17.5) | 38 (22.2)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126 (63.0) | 39 (19.5) | 35 (17.5) | 200 (50.6) | 3.11 (2) |
| | 고등학교 | 120 (61.5) | 50 (25.6) | 25 (12.8) | 195 (49.4) | |
| 계 | | 246 (62.3) | 89 (22.5) | 60 (15.2) | 395 (100.0) | |

** p<.01

이상과 같이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그

렇지 않은 교사보다 많았으며,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남자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하는 현행 제도의 기준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하는 현행 제도의 기준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2>와 같다. <표 IV-22>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하는 현행 제도(경력 2년)에서 교육전문직 경력은 3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행대로 29.4%, 5년 이상 14.2%, 4년 이상 7.6%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필요없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15.9%를 차지하였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는 부장교사보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하는 현행 제도에서 교육전문직 경력은 필요없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3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직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경력별로는 10년 이하 교사가 11년 이상 교사보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하는 현행 제도에서 교육전문직 경력은 3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고,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5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하는 현행 제도에서 교육전문직 경력은 필요없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4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하는 현행 제도에서 교육전문직 경력은 3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현행대료가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하는 현행 제도에서

교육전문직 경력은 3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필요없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2>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하는 현행 제도의 기준에 대한 인식

| 구 분 | | 현행대로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필요 없다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84 (32.2) | 80 (30.7) | 21 (8.0) | 30 (11.5) | 46 (17.6) | 261 (66.1) | 8.74 (4) |
| | 부장교사 | 32 (23.9) | 50 (37.3) | 9 (6.7) | 26 (19.4) | 17 (12.7)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22 (31.4) | 26 (37.1) | 5 (7.1) | 7 (10.0) | 10 (14.3) | 70 (17.7) | 10.51 (8) |
| | 11~20년 | 55 (32.0) | 51 (29.7) | 13 (7.6) | 19 (11.0) | 34 (19.8) | 172 (43.5) | |
| | 21년 이상 | 39 (25.5) | 53 (34.6) | 12 (7.8) | 30 (19.6) | 19 (12.4) | 153 (38.7) | |
| 학위 | 학사 | 68 (30.1) | 73 (32.3) | 13 (5.8) | 33 (14.6) | 39 (17.3) | 226 (57.2) | 3.15 (4) |
| | 석사 | 48 (28.4) | 57 (33.7) | 17 (10.1) | 23 (13.6) | 24 (14.2) | 169 (42.8) | |
| 성별 | 남자 | 58 (25.9) | 78 (34.8) | 15 (6.7) | 37 (16.5) | 36 (16.1) | 224 (56.7) | 5.26 (4) |
| | 여자 | 58 (33.9) | 52 (30.4) | 15 (8.8) | 19 (11.1) | 27 (15.8)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58 (29.0) | 71 (35.5) | 18 (9.0) | 28 (14.0) | 25 (12.5) | 200 (50.6) | 4.93 (4) |
| | 고등학교 | 58 (29.7) | 59 (30.3) | 12 (6.2) | 28 (14.4) | 38 (19.5) | 195 (49.4) | |
| 계 | | 116 (29.4) | 130 (32.9) | 30 (7.6) | 56 (14.2) | 63 (15.9) | 395 (100.0) | |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하는 현행 제도에서 교육전문직 경력은 3년 이상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와 교육 경력, 학위, 성별, 그리고 학교급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기간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기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3>과 같다. <표 IV-23>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연수기간은 1년 이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년 이하 39.5%, 3년 이하 10.9%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없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2.3%로 매우 적었다.

<표 IV-23>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기간

| 구 분 | | 1년 이하 | 2년 이하 | 3년 이하 | 필요 없다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113 (43.3) | 111 (42.5) | 33 (12.6) | 4 (1.5) | 261 (66.1) | 8.52* (3) |
| | 부장교사 | 74 (55.2) | 45 (33.6) | 10 (7.5) | 5 (3.7)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27 (38.6) | 36 (51.4) | 7 (10.0) | - | 70 (17.7) | 14.84* (6) |
| | 11~20년 | 78 (45.3) | 65 (37.8) | 26 (15.1) | 3 (1.7) | 172 (43.5) | |
| | 21년 이상 | 82 (53.6) | 55 (35.9) | 10 (6.5) | 6 (3.9) | 153 (38.7) | |
| 학위 | 학사 | 102 (45.1) | 91 (40.3) | 32 (14.2) | 1 (0.4) | 226 (57.2) | 13.64** (3) |
| | 석사 | 85 (50.3) | 65 (38.5) | 11 (6.5) | 8 (4.7) | 169 (42.8) | |
| 성별 | 남자 | 119 (53.1) | 76 (33.9) | 21 (9.4) | 8 (3.6) | 224 (56.7) | 12.60** (3) |
| | 여자 | 68 (39.8) | 80 (46.8) | 22 (12.9) | 1 (0.6)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89 (44.5) | 85 (42.5) | 22 (11.0) | 4 (2.0) | 200 (50.6) | 1.76 (3) |
| | 고등학교 | 98 (50.3) | 71 (36.4) | 21 (10.8) | 5 (2.6) | 195 (49.4) | |
| 계 | | 187 (47.3) | 156 (39.5) | 43 (10.9) | 9 (2.3) | 395 (100.0) | |

* p<.05, ** p<.01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연수기간은 2년 이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1년 이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52$, $p<.05$).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연수기간은 1년 이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2년 이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84$, $p<.05$).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연수기간은 3년 이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1년 이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3.64$, $p<.01$).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연수기간은 1년 이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2년 이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60$, $p<.05$).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연수기간은 2년 이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1년 이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연수기간은 1년 이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부장교사와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석사학위 교사, 그리고 남자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연수기간은 1년 이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질 향상 방안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질 향상 방안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표 IV-24>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질 향상을 위해 임용 후 현직 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직연수에 계속 참여 32.9%, 임용 전 석사과정 의무화 10.9%, 임용 후 석사과정 의무화 4.1%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질 향상을 위해 현직연수에 계속 참여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임용 후 현직 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

<표 IV-24>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질 향상 방안

| 구 분 | | 임용 후 현직 연수과정 설치 운영 | 현직 연수에 계속 참여 | 임용 후 석사과정 의무화 | 임용 전 석사과정 의무화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124 (47.5) | 98 (37.5) | 8 (3.1) | 31 (11.9) | 261 (66.1) | 10.74* (3) |
| | 부장교사 | 82 (61.2) | 32 (23.9) | 8 (6.0) | 12 (9.0)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26 (37.1) | 33 (47.1) | 1 (1.4) | 10 (14.3) | 70 (17.7) | 19.15** (6) |
| | 11~20년 | 85 (49.4) | 63 (36.6) | 7 (4.1) | 17 (9.9) | 172 (43.5) | |
| | 21년 이상 | 95 (62.1) | 34 (22.2) | 8 (5.2) | 16 (10.5) | 153 (38.7) | |
| 학위 | 학사 | 111 (49.1) | 89 (39.4) | 10 (4.4) | 16 (7.1) | 226 (57.2) | 14.86** (3) |
| | 석사 | 95 (56.2) | 41 (24.3) | 6 (3.6) | 27 (16.0) | 169 (42.8) | |
| 성별 | 남자 | 128 (57.1) | 60 (26.8) | 10 (4.5) | 26 (11.6) | 224 (56.7) | 8.84* (3) |
| | 여자 | 78 (45.6) | 70 (40.9) | 6 (3.5) | 17 (9.9)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102 (51.0) | 66 (33.0) | 12 (6.0) | 20 (10.0) | 200 (50.6) | 4.20 (3) |
| | 고등학교 | 104 (53.3) | 64 (32.8) | 4 (2.1) | 23 (11.8) | 195 (49.4) | |
| 계 | | 206 (52.2) | 130 (32.9) | 16 (4.1) | 43 (10.9) | 395 (100.0) | |

* p<.05, ** p<.01

며,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74, p<.05$).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질 향상을 위해 임용 후 현직 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현직연수에 계속 참여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9.15, p<.05$).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질 향상을 위해 현직연수에 계속 참여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임용 후 현직 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86, p<.01$).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질 향상을 위해 임용 후 현직 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현직연수에 계속 참여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84, p<.05$).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모두 별다른 차이 없이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질 향상을 위해 임용 후 현직 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이상과 같이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질 향상을 위해 임용 후 현직 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부장교사와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석사학위 교사, 그리고 남자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질 향상을 위해 임용 후 현직 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전문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5>와 같다. <표 IV-25>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해 장학담당자 자신과 장학활동 프로그램, 장학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학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9.7%, 장학의 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15.2%, 장학담당자 자신에 대한 평가 7.1%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해 장학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장학담당자 자신과 장학활동 프로그램, 장학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직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경력별로는 10년 이하 교사와 21년 이상 교사가 11~20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해 장학담당자 자신과 장학활동 프로그램, 장학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11~20년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장학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교사가 석사학위 교사보다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해 장학담당자 자신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석사학위 교사는 학사학위 교사보다 장학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는 남자교사와 여자교사가 별다른 차이 없이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해 장학담당자 자신과 장학활동 프로그램, 장학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해 장학담당자 자신과 장학활동 프로그램, 장학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보다 장

학담당자 자신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5> 전문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

| 구 분 | | 장학 담당자 자신에 대한 평가 | 장학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장학의 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 ① + ② + ③ 모두에 대한 평가 | 계 | χ^2 (df) |
|----------|--------|------------------------|-------------------------|-----------------------------|---------------------------|----------------|------------------|
| 직위 | 교사 | 17 (6.5) | 53 (20.3) | 43 (16.5) | 148 (56.7) | 261 (66.1) | 1.53 (3) |
| | 부장교사 | 11 (8.2) | 25 (18.7) | 17 (12.7) | 81 (60.4) | 134 (33.9) | |
| 교육 경력 | 10년 이하 | 3 (4.3) | 13 (18.6) | 9 (12.9) | 45 (64.3) | 70 (17.7) | 9.77 (6) |
| | 11~20년 | 12 (7.0) | 39 (22.7) | 34 (19.8) | 87 (50.6) | 172 (43.5) | |
| | 21년 이상 | 13 (8.5) | 26 (17.0) | 17 (11.1) | 97 (63.4) | 153 (38.7) | |
| 학위 | 학사 | 20 (8.8) | 41 (18.1) | 35 (15.5) | 130 (57.5) | 226 (57.2) | 3.05 (3) |
| | 석사 | 8 (4.7) | 37 (21.9) | 25 (14.8) | 99 (58.6) | 169 (42.8) | |
| 성별 | 남자 | 17 (7.6) | 45 (20.1) | 32 (14.3) | 130 (58.0) | 224 (56.7) | 0.49 (3) |
| | 여자 | 11 (6.4) | 33 (19.3) | 28 (16.4) | 99 (57.9) | 171 (43.3) | |
| 학교급 | 중학교 | 11 (5.5) | 38 (19.0) | 31 (15.5) | 120 (60.0) | 200 (50.6) | 1.87 (3) |
| | 고등학교 | 17 (8.7) | 40 (20.5) | 29 (14.9) | 109 (55.9) | 195 (49.4) | |
| 계 | | 28 (7.1) | 78 (19.7) | 60 (15.2) | 229 (58.0) | 395 (100.0) | |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해 장학담당자 자신과 장학활동 프로그램, 장학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위와 교육경력, 학위, 성별, 그리고 학교급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의 선발, 임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전문직의 선발과 임용, 전문화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교육전문직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수한 교육전문직 인력 선발 및 전문화 방안을 제시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행 교육전문직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전문직의 선발 및 임용에 대한 교사의 지각은 어떠한가?

셋째,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임용전형규정을 참조하고, 일선 중·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얻어 설문지를 만들었다. 설문지는 현행 교육전문직에 대한 교사의 인식 6문항, 교육전문직의 선발 및 임용에 대한 교사의 지각 13문항,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방안 7문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주도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7개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최근 10년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은 교육감의 재량

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교육감이 친분 위주로 교육전문직 임용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면 승진 기회가 많아서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이 많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전문직 장학활동 수행상 가장 큰 문제점은 장학 요원 부족과 장학요원 자질의 부족, 경제적 대우 미흡 등 복합적 요인에 있으며,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의 요인도 자격기준의 불합리와 현직연수의 미흡, 선발 이후 임용전 연수의 미흡 등의 복합적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전문직의 선발 및 임용에 대한 교원의 지각을 살펴본 결과, 교육전문직 선발시 교육경력은 10년 이상이 가장 타당하며, 학위는 석사 이상, 근무성적은 “우” 이상이, 소지자격은 1급 정교사 이상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직 선발시 남, 여 비율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전문직 선발시 연구성과와 부장교사 경력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보다 많았고, 부장교사 경력은 5년 이상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방안을 살펴본 결과,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의 선발방법은 필답고사가 가장 적합하며, 필답고사 시험과목은 교양, 교육학, 현장실무가 적합하고, 선발인원은 소요 인원이,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2년간이, 합격자의 임용은 직위와 상관없이 성적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 전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전직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보다 많았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하는 현행 제도에서 교육전문직 경력은 3년 이상이 가장 적당하며, 직

무수행에 연수기간은 1년 이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임용 후 현직 연수 과정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장학담당자 자신과 장학활동 프로그램, 장학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 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현재 교육전문직 임용은 교육감의 친분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투명한 절차 및 공정한 선발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전문직 자질 부족은 불합리한 자격기준과 현직 연수의 미흡이 주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운영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교육전문직을 발굴·임용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은 교육전문직 선발 임용에 있어서 교육경력은 10년 이상, 학위는 석사학위 이상, 근무성적은 우 이상, 소지자격은 1급 정교사 이상이 타당하고 인식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자격기준에 있어서 교육경력과 근무성적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와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교감자격 소지자보다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전문직의 응시 기회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전직시 자격기준이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넷째,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선발방법은 필답고사가 적합하며, 필답고사의 시험과목은 교양, 교육학, 현장실무가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전문직의 전직 경력은 3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직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연수과정의 설치·운영이 시급하므로, 교육전문직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임용전 연수기관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연수프로그램을 교원과 분리하여 교육전문직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전문직이라는 이름만 붙여 놓고 전문자격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장학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요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이므로 수업장학, 장학행정, 교육연구전문가로 세분화된 교육전문직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전문직 선발을 중복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교감 발령순위 명부와 같이 필요에 따라 임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영삼(1997). 장학론. 서울: 세영사.
- 교육법전편찬회(2003). 교육법전. 서울: 교학사
- 권오걸(1994). 교육전문직 임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김석용(1997). 교육전문직의 임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남정걸(1996).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서울: 교육과학사.
- 박동문(1998). 장학담당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명(2001). 장학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종근·정태범(1992). 교육행정·교육경영. 서울: 정민사.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1994).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 서정화(1989). 교육인사행정. 서울: 세영사.
- 소순희(2003). 초등 장학사 선발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길동(1999). 현행 장학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보영(1999). 교사의 장학활동 인식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식(1999). 장학론. 서울: 교육과학사.

- 전준수(1996). 장학담당자의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범(1996). 장학론.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 (1995). 교육행정학: 기초와 발전. 서울: 정민사.
- 제주도교육청(2001). 제주도 교육전문직 임용전형규정. 제주도 교육예규 제 53호
- 조 결(1985). 교육전문직의 직무와 임용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병효(1981). 장학론. 서울: 배영사.
- 주삼환(1989). 장학평가의 방법: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교육평가원.
- 최병현(2000). 장학담당자의 수업장학활동에 대한 교사의 지각과 기대.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창옥(1999). 교육전문직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한호(2002). 장학사의 장학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장학지도 개선 방안.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bara G. B., & Danley, W. E.(1980), The instructional leadership role of central office supervisors, *Educational Leadership*, 37(8).
- Campbell, R. F.(1996). *Introduction to educational administration(3rd ed)*. Boston: Allyn and Bacon.
- Davis, K.(1972). *Human behavior at work: Human rela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4th ed.)*. New York: McGraw-Hill.

Abstract

A Study on Ways to Professionalize Educational Prof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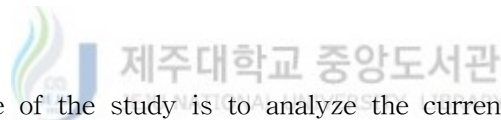
Ko, Jae Ok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ong Pil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practice and problems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educational profession in Jeju. Also, the study intends to suggest better ways to select and appoint educational profession and suggest ways to make educational profession professionalize to enhance the quality of schooling.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made a questionnaire based on the appointment regulations of educational profession and consulted with teachers. The questionnaire is consisted of 26 items(6 for teachers' perception on educational profession, 13 for teachers' perception on selection and appointment, and 7 for ways to professionalize the job). 41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14 schools(7 middle schools and 7 high schools),

2)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5, 2004

and 395 copies were returned and analyzed using SPSS 10.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thought that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educational profession in Jeju were done based on closeness of friendship with the superintendent. Also, they perceive that educational profession has many problems, including lack of personnels, lack of capacity, inappropriate working condition, lack of on-the-job training, and inappropriate certificate criteria.

Second, for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teachers answered that minimum requirements for educational profession are 10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a master's degree, and "wu or higher" scores in the teacher evaluation. Also, they replied that the gender need not to be considered, but the experience of teachers in charge is need.

Third, the best way to select educational profession is using a written exam and cultural subjects, education and teaching practice should be included in the exam. Also, teachers replied that the required number of personnel should be selected and the maximum waiting period is two years. The post can be changed after working more than 3 years, and 1 year of on-the-job training is required for management of the work.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

교육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노심초사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교육대학원 졸업반이 되어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의 전문화에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 높은 식견을 가지신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본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평소 생각하시고 느낀 점을 설문을 통하여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본 논문의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04. 4.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교 재 옥 드림

◎ 다음 각 항에 대한 선생님의 해당 사항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위별

① _ 교사 ② _ 부장교사 ③ _ 교감, 교장

2. 교육경력별

① _ 10년 이하 ② _ 11 ~ 20년 ③ _ 21 ~ 30년 ④ _ 31년 이상

3. 학위별

① _ 학사 ② _ 석사 ③ _ 박사

4. 성별

① _ 남자 ② _ 여자

5. 학교급별

- ① _ 중학교 ② _ 고등학교

☆ 다음 설문 문항을 두루 살피시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언론에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교육감 비리 및 교육감 선거는 교육전문직 임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10년 간 실시한 교육전문직 임용 기준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_ 교육감이 재량대로 ② _ 선발고사 성적순위로
③ _ 능력 위주로 ④ _ 현장 실무 경험이 많은 순위로

2. 1번의 ①항에 √ 표 하셨다면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 ① _ 교육감 선거에 도움준 순위로 ② _ 능력 위주로
③ _ 경력 위주로 ④ _ 친분 위주로

3. 교육전문직 임용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선발고사에 응시할 인원은 ?

- ① _ 아주 많아진다 ② _ 많아진다 ③ _ 보통이다
④ _ 그저 그렇다

4. 3번에서 ①,②항에 √ 표 하였다면 그 이유는 ?

- ① _ 승진 기회가 많아서 ② _ 인성적 자질이 있어서
③ _ 전문적 자질이 있어서 ④ _ 경영적 자질이 있어서

5. 교육전문직의 장학활동 수행상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_ 장학 요원수 부족 ② _ 장학요원의 자질부족
③ _ 경제적 대우 미흡 ④ _ ① + ② + ③ 의 복합 요인

6. 교육전문직의 자질 부족 요인은 ?

- ① _ 자격기준의 불합리 ② _ 현직 연수의 미흡
③ _ 선발 이후 임용 전 연수의 미흡
④ _ ① + ② + ③ 의 복합 요인

● 현재 제주도의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 임용을 위한 전형대상자는 현직교감, 교감자격소지자,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 기준에 관한 방안 중 선생님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7. 교육경력은 ?

- ① _ 5년 이상 ② _ 10년 이상 ③ _ 15년 이상
 ④ _ 20년 이상 ⑤ _ 필요 없다

8. 현재는 학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학위 제한을 한다면 ?

- ① _ 학사 이상 ② _ 석사 이상 ③ _ 박사 이상 ④ _ 필요 없다

9. 근무성적은 ?

- ① _ “수” 이상 ② _ “우” 이상 ③ _ “미” 이상 ④ _ 필요 없다.

10. 소지자격은 ?

- ① _ 1급 정교사 이상 ② _ 교감자격 이상 ③ _ 교감경력자 이상
 ④ _ 필요 없다



11. 여교사들의 전문직 선발은 ?

- ① _ 남, 여 비율을 적용한다. ② _ 남, 여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_ 잘 모르겠다

12. 연구 성적은 ?

- ① _ 필요하다 ② _ 필요하지 않다 ③ _ 잘 모르겠다

13. 부장교사 경력은 ?

- ① _ 필요하다 ② _ 필요하지 않다 ③ _ 잘 모르겠다

14. 13번의 ①항에 √ 표 하였을 경우 다음 중 어느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_ 2년 이상 ② _ 3년 이상 ③ _ 5년 이상
 ④ _ 7년 이상 ⑤ _ 필요 없다

●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 임용 후보자의 선발방법으로 다음 중 어느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5. 현행 선발방법은 서류전형, 필답고사 및 면접입니다. 선생님의 견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선발방법을 모두 √ 표 해주십시오.

- ① _ 서류전형 ② _ 면접 ③ _ 필답고사
④ _ 수업기술 ⑤ _ 컴퓨터 조작 능력

16. 15번의 ③항에 √ 표 하였을 경우, 현재는 교육학·교양과목을 교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험과목은 ?

- ① _ 교양과 현장 실무 ② _ 교양, 교육학 ③ _ 현장실무
④ _ 교양, 교육학, 현장실무

17. 선발인원은 ?

- ① _ 소요 인원만 ② _ 소요 인원의 2배수
③ _ 소요 인원의 3배수 ④ _ 응시 인원 모두(서열순)

18. 현재 임용후보자 순위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권자의 필요에 의하여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용 후보자의 자격 유효 기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

- ① _ 1년간 ② _ 2년간 ③ _ 3년간 ④ _ 필요 없다

19. 현재 임용권자가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위원회 심의 후, 임용후보자 순위명부에 의하여 선 순위자 순으로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격자의 임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

- ① _ 직위와 상관없이 성적 순위대로 ② _ 직위별 성적 순위대로
③ _ 직위별 성별 성적 순위대로 ④ _ 교육경력 순위대로

●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의 전문화 방안으로 다음 중 어느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0. 교원과 전문직 상호간에 전직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 ① _ 쉽게 전직하는 것이 좋다
② _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전직이 좋다
③ _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

